

# ABL

이제는 중국이다!  
위안화로 차이나게 준비하는!



[ 2020년 4월 1일 제작 ]

## 차이나는 무배당 ABL저축보험

- 본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 본 보험계약의 통화는 중국의 통화(위안화)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본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다만, 원화환산납입옵션 선택 또는 특약 부가 시, 납입 및 지급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를 대한민국 통화(원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 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따라서 원-위안화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A Better Life

1954년 출범한 ABL생명은 60여 년의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보험 그룹의 일원으로서 쌓아온 선진 상품개발능력, 디지털 고객서비스 환경을 기반으로 115만 명의 고객에게 최상의 보험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입보험료 2조 3,390억 원(2019년 12월 말 기준)
- 총자산 19조 8,873억 원(2019년 12월 말 기준)

<출처:ABL생명 FY2019 결산보고서>

## 고객의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을 보장하는 ABL생명

- 1954년 설립, 한국 시장에서 쌓아온 60년 역사와 전통
-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한 선진 금융 기법과 노하우, 변액·보장성보험부터 연금·저축성보험까지 30여종의 폭넓은 상품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 보장
- 인터넷/모바일 전자서명청약시스템과 사이버센터/모바일센터를 통해 보험가입, 청약, 납입, 사고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처리
- 업계 최초 비대면 본인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간편하게 송금
- 업계 최초 화상 고객 서비스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고객 상담
- 업계 최초 사고보험금 실시간 지급제도 시행
- 2012년 보험업계 최초 변액연금보험의 '금융자산운용방법'에 대한 특허 획득(\* 특허 제 10-1211809호)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 경제,  
이제 위안화에 투자할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ABL생명**이 시작합니다.

## 차이나는 무배당ABL저축보험



### 차이나는(무)ABL저축보험의 **차이나는** 특징 3가지

#### 1

##### 차이나는 외화저축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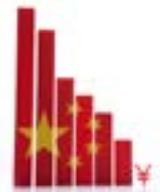
- 위안화로 납입하고 위안화로 받아, 통화 분산을 통해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 중국 유학자금이나 귀국자금 등 필요한 위안화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따라서 원-위안화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2

##### 차이나는 이율 적용

- 1형 적립형의 계약자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하는 공시이율로 하여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적용합니다.
  - 2형 거치형의 계약자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이율확정기간은 보험계약 가입 시 선택(5년 또는 10년)됩니다. 이때 이율 확정기간은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7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 다만,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3

##### China는 세계 경제의 중심

-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 10월 1일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을 가진 통화로 정식 편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의 엔화에 이어 중국의 위안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공식적인 통화로 쓰이게 되었으며, 세계 경제에서 중국 위안화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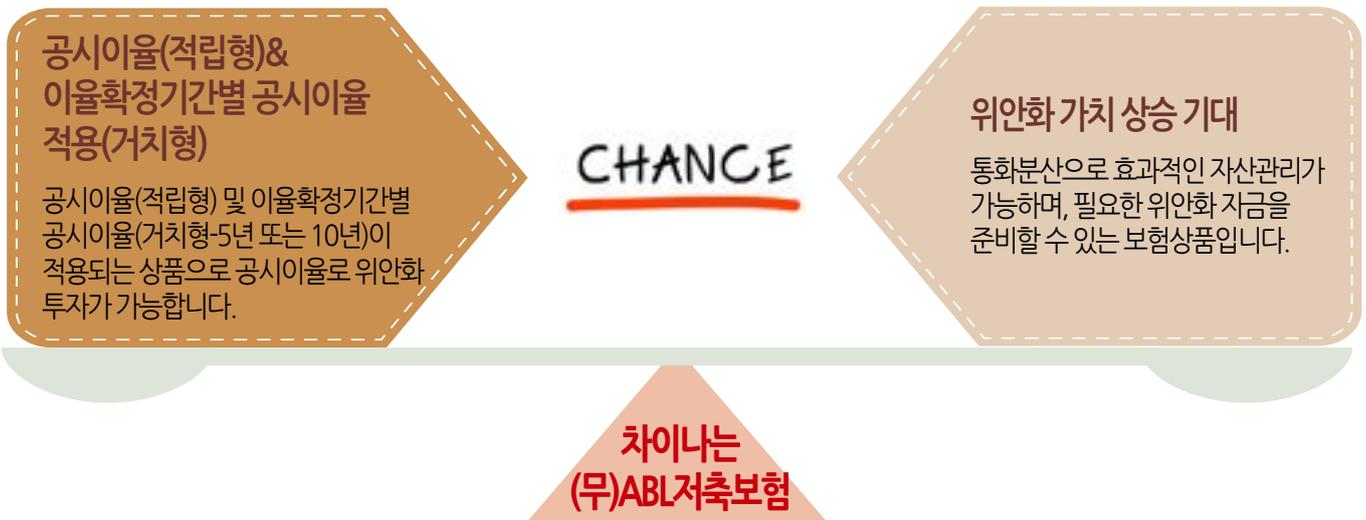
## 한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10년 국고채 기준



출처: 한국-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중국-Bloomberg 2013.1 ~ 2020. 1

- ※ 상기 이율이 본 상품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는 언제든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본 상품 거치형은 가입시점의 중국인민은행 기준 금리를 반영하여 계산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본 상품 적립형은 중국 인민은행 기준금리가 반영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차이나게! China로! 중국을 잘 아는 ABL생명의 '위안화' 투자 제안!



- ※ 본 상품은 외화보험으로, 원-위안화 환율 변동에 의해 원화기준으로 환산 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적립형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마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 거치형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기간은 보험계약 가입 시 선택(5년 또는 10년)하게 되며, 이율확정기간은 선택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확정되어 변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 ※ 거치형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가입을 위한 안내

상품명	보험종류		납입기간	기본보험료	가입단위
차이나는 (무)ABL저축보험	1형 적립형		전기납	CNY ¥ 3,000 이상	CNY ¥ 100
	2형 거치형	5년 이율 확정형	일시납	CNY ¥ 120,000 이상	CNY ¥ 100
		10년 이율 확정형			

## 보험금 지급 기준

### 주계약

급부명	지급 사유	보험종류	지급 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적립형(5년납)	기본보험료의 3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적립형(10년납)	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거치형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다만, 해지환급금이 사망보험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계약자적립금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적립금이란 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가입시점의 공시이율(1형(적립형)) 및 이율확정기간별공시이율(2형(거치형))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 본 상품은 **외화보험으로, 원-위안화 환율 변동에 의해 원화기준으로 환산 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무)뉴원화고정납입특약

1.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는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5%로 합니다.
  - 나. 이 특약이 부가된 시점의 주계약 기본보험료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고정된 금액을 '원화고정보험료'라 합니다.
  - 다. 매회 납입하는 원화고정보험료를 외화로 평가한 금액 중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특약의 계속보험료로 합니다.
2.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 가.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의 기본보험료와 이 특약의 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하여 납입합니다.
  - 나.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해당 월 주계약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3.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에 관한 사항
  - 가.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원화 환산 및 외화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은 원화고정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직전 영업일(이하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이라 함)로 합니다.
  - 나.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이하 '주거래 은행'이라 함)의 영업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의 그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이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란, 송금은행이 송금 의뢰인에게 외환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4.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율
  -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종고시환율)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과 최종 고시하는 매매기준을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환산율을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율'이라 합니다.
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주계약의 적립이율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6. 주계약 기본보험료 부족시 보전에 관한 사항
  - 가.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화고정보험료의 외화평가 금액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이 특약의 적립금에서 공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부족한 금액(주계약 기본보험료의 부족한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관리비용 제외)을 보전합니다.
  - 나. 이 특약의 적립금에서 공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 다. 해당월 원화고정보험료의 외화평가 금액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보다 적고 해당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이 특약의 적립금이 기본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익월 10일까지 이 사실을 통지하며, 계약자는 회사의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선택이 없을 경우에는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합니다.
    - (1)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
    - (2)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7.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 가.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함)
    - (1) 납입유예기간은 '6. 주계약 기본보험료 부족시 보전에 관한 사항'에 의한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에 도래하는 원화고정보험료 납입기일부터 1년으로 합니다.
    - (2) 계약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납입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납입유예 기간 연장은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 종료 15일전 또는 회사의 납입유예기간 종료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납입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8.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의 효력
  - (1)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주계약의 해지환급금에서 필요한 주계약 위험보험료와 주계약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하여 대체합니다.

- (2) 납입유예기간 중 주계약의 해지환급금에서 주계약의 위험보험료와 주계약의 계약관리비용을 더 이상 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화고정보험료납입유예가 중지됩니다.
  - (3) '2)에 의하여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가 중지된 경우, 회사는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가 중지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계약자는 회사의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4) 납입유예기간 및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가 중지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9. 납입유예기간 종료 및 새로운 보험료 납입기일 통지
- (1)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및 새로운 납입기일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2)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2개월 이상 원화고정보험료의 외화평가 금액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보다 큰 경우 납입유예를 중지하고 원화고정보험료를 납입 할 수 있습니다.
10. 주계약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 (1) 보험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합니다.
  - (2) 납입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순연합니다.
  - (3) "(1)" 또는 "(2)"의 적용에 따라 변경후의 보험기간 또는 납입기간이 주계약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사업방법서 이내에서 변경합니다.
  - (4)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단기납입의 경우에는 계약자 신청에 따라 보험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주계약 해지환급금 계산시 경과기간 적용에 관한 사항
- (1) 주계약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납입경과기간월수에는 납입유예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2) 미상각 신계약비 상각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순연합니다.
12.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 가.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이란, '6. 주계약 기본보험료 부족시 보전에 관한 사항'에 의한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 주계약 기본보험료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5%에 상당하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새로운 원화고정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새롭게 고정된 금액인 '신원화고정보험료'를 재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가에 따라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 해당일부터 매회 납입하는 '신원화고정보험료'를 외화로 평가한 금액 중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특약의 계속보험료로 합니다.
13.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 계약자에 의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14. 기 타
- 기타 사항은 주계약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 ※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 특약의 원화고정납입서비스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화환산지급특약

- 1. 적용대상

외국통화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주계약에서 보험금 등을 대한민국 법화(이하 "원화"라 함)로 환산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상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2. 원화환산에 관한 사항

  - 가. 이 특약에 따라 주계약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합니다.
  - 나.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산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하 "환산기준일"이라 함)이라 합니다.
  - 다. 환산기준일은 보험금 등의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 라. '다'의 환산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이하 "주거래 은행"이라 함)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환산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의 그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 마. 원화환산율은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종고시환율)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입율과 최종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원화환산율로 합니다. 이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란, 송금은행이 송금 의뢰인에게 외환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 3. 보험금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회사가 이 특약이 부가되는 주계약에서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한 보험금 등을 취소하거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무효에 따라 고객이 지급받은 보험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고객은 지급받은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원화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 4. 기 타

기타 사항은 주계약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 특약의 원화환산지급서비스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화환산납입특약

- 1. 적용대상

외국통화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주계약에서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대한민국 법화(이하 "원화"라 함)로 환산하여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2. 원화환산에 관한 사항

  - 가. 이 특약에 따라 주계약에서 납입하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합니다.
  - 나.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산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하 "환산기준일"이라 함)이라 합니다.
  - 다. 환산기준일은 제2회 이후 주계약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 라. '다'의 환산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이하 "주거래 은행"이라 함)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환산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의 그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 마. 원화환산율은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종고시환율)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과 최종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원화환산율로 합니다. 이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란, 송금은행이 송금 의뢰인에게 외환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 3. 보험금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는 경우 보험약관 제7조(특약의 적용)에서 납입한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여 원화로 돌려드립니다. 또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원화로 지급합니다.

  - 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무효
  - 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취소
  - 다. 주계약 약관 '보험계약의 성립' 관련 조항에서 정한 계약의 거절
  - 라. 주계약 약관 '계약의 철회' 관련 조항에서 정한 청약철회
  - 마. 주계약 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관련 조항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취소

- 4. 기 타

기타 사항은 주계약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 특약의 원화환산납입서비스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W 해지환급금 예시표

### 적립형

기준 : 여자40세, 월납입보험료 CNY ¥ 3,000, 공시이율 2020년 3월 기준, 단위 : CNY ¥

경과 기간	5년 만기						10년 만기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중 작은 값		공시이율 1.98% 가정		최저보증이율 가정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중 작은 값		공시이율 1.98% 가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7,463	82.9%	7,467	83.0%	7,467	83.0%	6,120	68.0%	6,123	68.0%	6,123	68.0%
6개월	16,255	90.3%	16,266	90.4%	16,266	90.4%	14,858	82.5%	14,869	82.6%	14,869	82.6%
9개월	25,084	92.9%	25,108	93.0%	25,108	93.0%	23,633	87.5%	23,658	87.6%	23,658	87.6%
1년	33,951	94.3%	33,994	94.4%	33,994	94.4%	32,446	90.1%	32,489	90.2%	32,489	90.2%
3년	106,279	98.4%	106,655	98.8%	106,655	98.8%	104,326	96.6%	104,698	96.9%	104,698	96.9%
5년	181,140	100.6%	182,199	101.2%	182,199	101.2%	178,714	99.3%	179,763	99.9%	179,763	99.9%
10년	-	-	-	-	-	-	367,523	102.1%	382,480	106.2%	382,480	106.2%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 1-2 조제 13호에 따른 현재(2020년 3월)의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 공시이율(연복리 1.98%)중 작은 값] 및 현재(2020년 3월)의 공시이율(연복리 1.98%)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7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금리의 변동이 없고 보험료를 납입해당일에 납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 적용금리가 변동하거나 보험료를 납입 해당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에 대하여만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공시이율은 매 1 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환급률은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보험료를 누계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본 상품은 만기시 최저보증금액이 설정된 상품입니다. 만기시까지 유지시 예시된 해지환급금과 관계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거치형

기준 : 여자40세, 일시납보험료 CNY ¥ 120,000,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2020년 3월 1일 ~ 3월 15일 기준, 단위 : CNY ¥

거치형	5년						10년					
	최저해지환급금 가정		해지시점 이율확정 기간별 공시이율 1.5% 상승 시 가정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2.22% 가정		최저해지환급금 가정		해지시점 이율확정 기간별 공시이율 1.5% 상승 시 가정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2.40% 가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93,878	78.2%	107,519	89.6%	115,191	96.0%	93,920	78.3%	98,134	81.8%	113,021	94.2%
6개월	94,330	78.6%	108,534	90.4%	115,858	96.5%	94,413	78.7%	99,104	82.6%	113,725	94.8%
9개월	94,784	79.0%	109,560	91.3%	116,530	97.1%	94,909	79.1%	100,084	83.4%	114,435	95.4%
1년	95,241	79.4%	110,596	92.2%	117,206	97.7%	95,409	79.5%	101,074	84.2%	115,149	96.0%
3년	98,984	82.5%	119,256	99.4%	122,768	102.3%	99,510	82.9%	109,367	91.1%	121,039	100.9%
5년	128,618	107.2%	128,618	107.2%	128,618	107.2%	103,809	86.5%	118,365	98.6%	127,256	106.0%
10년	-	-	-	-	-	-	144,351	120.3%	144,351	120.3%	144,351	120.3%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시장가격조정률(MVA)은 20%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금액은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 상기 예시된 금액 중 '최저해지환급금 가정'의 해지환급금은 가입시 확정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한 계약자적립금에 보험기간 동안 시장가격조정률(MVA)의 최대한도인 20%를 적용한 금액이며,
  - 상기 예시된 금액 중 '해지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1.5%상승 시 가정'의 해지환급금은 가입시 확정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한 계약자적립금에 해지시점의 이율확정 기간별 공시이율이 1.5%p 상승했음을 가정하여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고,
  - 상기 예시된 금액 중 '현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가정'의 해지환급금은 가입시 확정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적용한 계약자 적립금에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변경으로 인해 '시장가격조정률(MVA)'이 변경된 경우 해지환급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7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2020년 3월 16일 환율을 기준으로 1위안(CNY)은 원화 환산 174.96원입니다. (KEB하나은행고시 매매기준을 기준)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따라서 원 위안화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시 유의사항

###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 가. 특별계정의 설정

본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두는 금액)은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 (1)적립형 : 1형 적립형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
- (2)거치형 : 2형 거치형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에 해당하는 자산

#### 나.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 (1) 회사는 해당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특별계정의 자산을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합니다.
  - 이 보험의 자산은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운용하되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국채, 회사채, 구조화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을 그 주된 운용 자산으로 합니다.
- (2)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자산 운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금리 급변, 대량 해지 등의 급격한 시장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2) 운용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3) 운용자산의 즉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 4) '1)' 내지 '3)'에 준하는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 (3) (1)호 내지 (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설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또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총 자산이 원화 1,0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는 (1)호 내지 (2)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1형(적립형)의 경우, 계약자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합니다.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 기준금리1 - 0.4%

(주1) 기준금리1 : 중국인민은행이 인터넷(<http://www.pbc.gov.cn>)을 통해서 매일 공시하는 CGB Yield Curve의 3년 수익률로 하고, 매일 1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2, 3, 4번째 영업일(3일)의 평균 기준금리로 합니다. (CGB Yield Curve : ChinaBond Government Bond Yield Curve)

(주2) 공시이율을 정하는 때에 해당 공시기관이 기준금리의 공시를 중단하거나 공시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시기관이나 공시방법을 적용하여 공시이율을 정합니다. 다만, 공시되는 기준금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된 값을 적용합니다.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리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를 통해서도 공시이율 및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7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2형(거치형)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이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변경일”이라 합니다)에 아래와 같이 이율확정기간별로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율(이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보험형태	이율확정기간
5년 이율확정형	5년
10년 이율확정형	10년

나. 가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보험가입시 설정한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않습니다.

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기준금리2 - 0.4%

(주1) 기준금리2 : 중국인민은행이 인터넷(<http://www.pbc.gov.cn>)을 통해서 매일 공시하는 CGB Yield Curve(중국국채 수익률)의 5년(5년 이율확정형), 10년(10년 이율확정형) 수익률로 하고, 매일 1일과 16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2, 3, 4번째 영업일(3일)의 평균 기준금리로 합니다.

(주2)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정하는 때에 해당 공시기관이 기준금리의 공시를 중단하거나 공시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시기관이나 공시방법을 적용하여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을 정합니다. 다만, 공시되는 기준금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된 값을 적용합니다.

라.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7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리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를 통해서도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바. 2형(거치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시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1)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자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 2)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MVA = 1 - \left\{ \frac{1 + \text{보험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1 + \text{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0.4\%} \right\}^{\frac{\text{잔여월수}}{12}}$$

다만,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 3)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4) '라'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조정률(MVA) 계산시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 '가'또는 '나'호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과 16일에 공시이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기준이율과 그 이후 매일 결정되는 기준이율과의 변동폭이 0.4%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이율 변경일과는 별도로 회사는 공시이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아.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계약에서 이율확정기간 동안 이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이율확정기간과 동일한 만기 구조를 갖는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자산과 부채를 대응시키는 투자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등의 가격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의 이율확정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장가격조정률(MVA)은 해지환급금에 대응하는 자산의 시장가격(매각손실 또는 이익)을 해지환급금에 반영하기 위한 비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 원화환산납입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원화환산납입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법화(이하 "원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 나. 이 옵션은 계약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1형의 경우 제 1회 기본보험료, 2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 해당하는 중국의 통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다. 환산기준일
  - (1) 중국의 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산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하 "환산기준일"이라 함)이라고 합니다.
  - (2) 환산기준일은 청약일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 (3) 환산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이하 "주거래 은행"이라 함)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환산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의 그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 라. 원화환산율
  - (1)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고공시환율)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과 최종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원화환산율로 합니다.
  - (2)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은 송금은행이 송금 의뢰인에게 외환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 마. 회사는 이 옵션이 부가된 계약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을 돌려드리는 경우 '나'호에서 납입한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여 원화로 돌려 드립니다. 또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원화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약관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른 거절
  - (2) 약관 "청약의 철회"에 따른 청약철회
  - (3) 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에 따른 계약의 취소
- 바.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옵션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및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 외화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이 보험상품은 외화보험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위안화)로 합니다. 따라서 원-위안화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통금이나 사고보통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사항 기본 확인

-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

### (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사'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불만족상담 및 민원상담 안내

### <불만 접수(상담) 방법 안내>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소비자부(우)07332
-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 팩스 : 02-3787-8719
-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 e-mail : customer@abllife.co.kr
-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 서울본부 :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2262-6570 / 영남지역본부 : 051-558-7801~4 / 대구지부 : 053-427-8051 / 호남지역본부 : 062-350-0111~4 / 중부지역본부 : 042-242-7002~4 / 원주지부 : 033-761-9672~3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이동 전화는 지역 번호-1332)

## 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